

## 成均館大學校 法科大學, 그 所屬 大學院 法學科와 高雄大學法學院 간의 友好交流協議書

성균관대학교와 고웅대학 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근거하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그 소속 대학원 법학과(이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통칭함)와 고웅대학법학원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협의를 맺는다.

1.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교수와 연구원의 교류를 실시한다.

(1) 파견교수는 1 회 1 인을 원칙으로 한다. 교수나 연구원의 구체적인 파견기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쌍방은 상대방의 파견교수를 위하여 연구실을 제공한다.

(3) 쌍방은 상대방의 파견교수나 연구원을 위하여 학술연구, 숙소 등 면에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한다.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학생교환을 실시한다.

(1) 교환학생의 신분은 성균관대학교에서는 '교환유학생'으로 하고, 고웅대학에서는 '교환학생'이라고 한다.

(2) 교환(유)학생은 파견대학교 본래의 절차와 책임 하에 피파견대학교의 기준에 맞추어 추천하며, 피파견대학교는 소정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교환(유)학생을 받아들인다.

(3) 교환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학기 단위의 교환도 인정할 수 있다.

(4) 교환(유)학생의 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면제한다.

(5) 교환(유)학생이 피파견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기로 한다.

(6) 교환(유)학생은 피파견대학교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 규정에 따른다.

(7) 숙식비, 여비, 의료비·손해보험료는 교환(유)학생이 부담한다. 단, 각종장학금제도 등의 원조를 받아서 이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3.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학술정보와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법학도서와 학술간행물을 상호 증정하고, 서로 상대방의 학술도서출판 등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4.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고웅대학법학원은 관심영역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추진 및 공동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등 점진적 교류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5. 본 협의는 쌍방의 서명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고, 양 대학의 학술교류협정이 효력을 지니는 기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양 대학 중의 어느 한쪽이 본 협의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또 6 개월 전의 예고로 본 협의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6. 본 협의의 원문은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각 2 부씩 작성하며, 양쪽 공히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한다.

2008년 1월 11일

성균관대학교

고웅대학

법과대학 학장

법학원 원장

李勝雨

朴 亨 明